

30초만 생각하면 청렴한 세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청탁 하기전 잠깐!
금품 받기전 잠깐!
딱! 30초

청탁금지

법이 연고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청탁금지법'이 만들어 갑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 부정청탁 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2.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 시 관련자 제재
- 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3.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

-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년 9월 28일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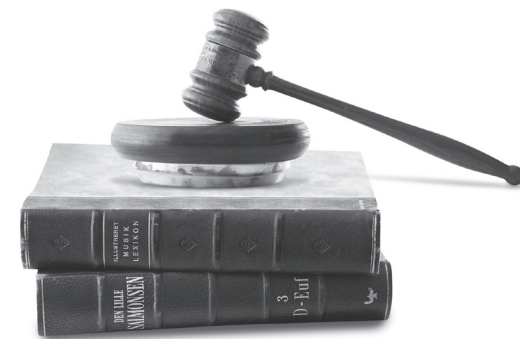
2018년 4월

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457-06

2018년 4월 (제306호)

생활에 유익한

법 무 상 식



전라남도

법령정보 이용안내

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law.go.kr>
- 도·시군 및 타시도 자치법규
• <http://www.elis.go.kr>
- 공기업·출연기관 규정관리시스템
• http://211.39.94.161:8088/law_rule

이용가능한 법률정보

- 법제처(www.moleg.go.kr)
최근제·개정법령, 입법예고사항, 판례속보
- 대법원(www.scourt.go.kr)
사건검색, 최근개정법령, 판례속보
- 넷로(www.netlaw.co.kr)
판례를 대법원, 하급심, 헌법재판소로 구분 제공
- 대한민국법률정보(www.lawkorea.com)
입법예고, 법률만화 등
-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law.jeonnam.go.kr)
법무행정정보,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등
- 법누리(yeslaw) : 입법예고, 법률뉴스 등
-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특허청, 국회도서관, 노동부 등

자치법규 접속방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
• 전라남도청 → 정부3.0 정보공개 → 법무행정서비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클릭
- 전라남도 행정포털을 통한 접속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 클릭

도 정 방 침

-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

- 1. 활기있는 지역경제
- 1. 소득높은 농축어업
- 1. 매력있는 문화관광
- 1. 온정있는 도민복지
- 1. 소통하는 창의도정

독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제·개정되는 새 법령과 자치법규를 도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월 법무상식지를 편집 발간·배부하고 있습니다.

「법무상식」지는

독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설계하고 통합하여 개개인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선해야할 사항 및 개인별 법률체험사례 등 법무상식지를 알차게 꾸밀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유익하고 충실한 「법무상식」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상식

- 편집에 참여한 사람들
• 법무통계담당관 박화현
• 법 제 팀 장 채희섭
김양현, 조신웅, 최지선, 채길병, 위영초

○ 보내실 곳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TEL : (061)286-2623 FAX : (061)286-4740 · (행)2623



법무상식

CONTENTS

www.jeonnam.go.kr

2018년 4월 통권 제306호

새로운 판례	2
법령해석사례(법제처)	21
행정심판 재결사례	63
생활법률 상담사례	74
법무단신	85
시행법령	104
솔로몬의 재판	105
참고자료	107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의 의의, 판단의 기준 시점 및 판단방법

* 대법원 2017후1342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이나,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후240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사리원’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 6. 26.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2016년에 실시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하여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직접 본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7다282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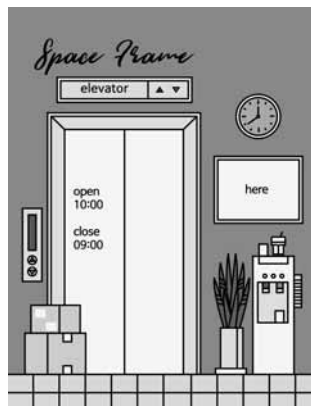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피고는 甲에게 승강기 설치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甲과의 소유권유보부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승강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甲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부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가액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형법 제70조 제2항의 시행일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적극)

* 대법원 2017도17809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0.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70조 제2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결정).

- ①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②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시킨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이 사건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위헌결정 선고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 2011. 11. 30.부터 2013. 4. 11.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3억 1,250만원에 처하면서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한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여 환형유치금액을 1일 250만원(노역장유치기간 : 525일)으로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칙조항을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엄마가 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을 단순한 보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대구고등법원 2015나3069

1. 본안전 항변(배척)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민법 제9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 대리 및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고(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원고를 대리한 성년후견인 B 및 B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당심 2017년 12월 8일자 변론기일에서, 원고 본인 및 원고 소송대리인이 1심 및 당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전부 추인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 및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1심 및 당심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임치해지로 인한 금원반환청구(배척)

원고가 2010년 7월 14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1, 제31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 제36호증의 1,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임치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원고는 2010년경 대구에서 혼자 살면서 당뇨병 등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대구에 사는 원고의 아들인 E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에게 “아들인 E가 나(원고)를 돌보지 않으니 누구든지 나(원고)를 돌봐주면 그 사람에게 내(원고)가 가진 돈을 주겠으니 돌봐 달라”고 하였고,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는 원고에 대한 부양문제를 의논하여 피고가 원고를 혼자 부양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양의 대가로 원고가 가진 돈 전부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를 서울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0년 7월 14일 서울에 있는 ○○은행 강남 영업부에 가서 예금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 ② 원고는 2012년 3월경 대구 ○○동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인근 병원에서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매달 원고에게 용돈과 생활비로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었다.
- ③ 원고는 2014년 5월 17일 대구 소재 K병원에 입원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입원 중에 있는데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간병하였고 위 K병원 입원비 합계 1,818만5,39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위 K병원 입원비 외에도 원고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로 1,044만5,010원, 생활비로 252만6,900원을 지출하였다. 위 지출액의 합계는 3,115만7,300원이다. ④ 원고의 자식으로 6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원고를 부양한 점,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합계 3,115만7,3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타인 토지에 수도물,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3291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민법 제218조 제1항),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9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6, 8, 10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로서는 쟁점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파트에 필요한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고, 또한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다.

- ① 울산광역시장은 1993년 3월 10일 피고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해당 시설물 관리청별로 인수·인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고, 피고는 2007년 9월 18일 울산광역시장에게서 쟁점 토지를 포함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하여 최종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 ② 원고들이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쟁점 토지는 환지계획상 도로부지인데, 이미 도로나 보도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시설물 관리청인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유권이 귀속될 예정이므로, 장래 피고가 재산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 ③ 피고는 2015년 5월 18일과 2015년 5월 29일 원고 조합에 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환지에정지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쟁점 토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 ④ 피고는 2015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으로 '2007년 6월 14일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 당시 사업부지는 공동주택지로 확정되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고, 사업부지인 4필지의 체비지 소유권은 원고조합에 있다. ○○지구의 기반시설 중 도시가스, 통신, 상하수도, 전기는 완료되어 있고, 도로 중 일부 구간은 아파트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원고 조합은 2015년 9월 7일 피고에게서 '○○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가스 정합시설을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완충녹지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서(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와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 가스 정압시설 설치에 공동주택 입주 6개월 전에 공급업체인 ○○도시가스에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 ⑤ 사업부지는 ○○지구 내에 위치하여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설령 피고 소유 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 ⑥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은 도로부지 지상이 아니라 지중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큰 어려움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잔여 공정을 진행하거나 ○○지구 내 다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

- ⑦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정률이 87%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아파트의 사용승인이나 입주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 대법원 2013다25194, 2013다25200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허위 경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피고 회사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로 채용되었다가 사실이 밝혀져 해고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로써 그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소송계속 중 원고의 경력사칭이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점에서 일반 계약과 다른 특성이 있으나 그 본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고, 다만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에 따라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인정될 뿐이며, 따라서 취소 이전의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인정됨에도 단지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간까지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 청구 사안

* 부산가정법원 2017㉔단200239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에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건 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양육 환경이 악화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교류도 단절되었으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그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사건본인의 양육상황과 면접교섭 상황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는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이 인정되는바, 2018년 2월 1일 이후의 장래양육비를 월 70만 원씩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장래양육비 변경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의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사건)

*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

피고인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① 변동성과급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②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며, ③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신고한 취업규칙 II. 급여 중 제17조는 변동성과급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변동성과급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300% 수준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시 꼭 업무방법에 의해 정해지는 범위 이내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변동성과급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사무소별 또는 직원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조합 전체 변동성과급의 지급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 2) 위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서는 이사회결로 변동성과급지급준칙(원래 명칭은 “인센티브상여금지급준칙”이었다가 2015년 3월 26일 위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은 2006년 4월 15일 제정되었고, 2009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개정되었다.

- 3) 변동성과급지급준칙에서는 2014년에는 98점부터 105점 사이에 대하여 지급률을 300%(월 통상임금에 대한 비율이다, 이하 지급률에 대하여는 같다)로 정하였고 2015년에는 성과급 지급률을 달성률이 100% 이상 110% 미만인 경우 부서별 지급률 200%와 개인별 지급률 100%를 합산한 3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2016년 3월 29일 업무직 및 계약직에 대하여는 달성률 100% 이상 110% 미만인 경우 부서별 지급률 100%와 개인별 지급률 100%를 합산한 20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이 개정될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
- 4) 임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 계약직의 월통상임금은 1년차의 경우 127만 8,060원이고, 연차가 증가할수록 월통상임금도 증가하며, 업무직의 월통상임금은 1년차의 경우 136만 800원이고, 연차가 증가할수록 월통상임금도 증가하며, 2015년 최저임금은 월 126만 1,080원이고, 2016년 계약직의 월통상임금은 1년차의 경우 141만원이고, 연차가 증가할수록 월통상임금도 증가하며, 업무직의 월통상임금은 1년차의 경우 151만원이고, 연차가 증가할수록 통상임금도 증가하며, 2016년의 최저임금은 월 136만 2,780원이다.

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2004. 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은 이 사건 조합 소속 근로자들 전체의 변동성과급, 즉,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문화된 준칙으로서, 그 내용은 단순히 1회적인 변동성과급 산정이

아니라 그 내용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개정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 경우도 있었으며, 개정된 경우에도 그 내용이 큰 변동이 없이 큰 틀이 대체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이는 신고된 취업규칙의 변동성과급 규정과 결합하여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신고한 취업규칙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둘째 및 셋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동일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의 변동성과급의 지급률을 합계 300%에서 200%로 낮추는 것은 변동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률이 낮아진 업무직 및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변경인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영업부담 및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주기 위하여 변동성과급 300% 중 100%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인상하였고, 그에 따라 수령하는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는 없다고 주장하나, 변동성과급 300% 중 100%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최저임금과 계약직 1년차의 월 통상임금을 비교해 보면, 월통상임금이 증가된 것은 최저임금의 증가, 즉 통상적인 임금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여(2015년 계약직 1년차, 2년차, 3년차는 월통상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2016년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은 업무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동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불이익한 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외국에서 안마행위를 한 내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조항을 적용하여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4도10051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88조 제3호는 위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은 우리나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안마사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위 규정의 목적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 제3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일본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시술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기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외국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도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추가되었는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7두4845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3항은 주식 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이하 ‘최대주주 등’이라고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하고,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 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292 판결 참조).

또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당초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예외사유를 신설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5항을 두어 예외사유를 확대하였고, 다만 그 부칙 제6조에서 위 제53조 제5항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즉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추가되었으나(제53조 제6항 제8호), 그 부칙 제7조에서 위 개정 규정을 위 시행령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 그 제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2016. 2. 5.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면, 그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이 가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이 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한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에 따라 위 주식을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를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추가한 2016. 2. 5.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상, 그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이 가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사례 1

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회 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이 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에서는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것과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공장”을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는 등록된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란 “제조업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공장 전부를 동일한 제조업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장이 소재한 건축물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거나(제1호) 공장 운영의 필수시설인 제도시설이 존재하지 않게 됨(제2호)에 따라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서 규율하려는 것은 등록된 공장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공장이 “제조업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공장의 등록취소 예외 사유를 갖추어 공장의 일부를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장을 “제조업”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장이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면 해당 공장은 그 등록된 내용, 즉 등록된 업체, 제조업종, 공장부지, 제도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 등에 따라 활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없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장의 공장용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의 사유를 적용하여 그 등록업체의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 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취소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가 해당 공장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여 등록된 업체 외의 업체가 해당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즉 사실상 임대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공장운영의 건전성 도모 등을 위하여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규제를 마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례 2

평택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 회 답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유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제1호),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제2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함)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는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되(본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제2항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이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대체 위원회”라 함)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대체 위원회의 경우 같은 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자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전번호 18026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는 이유로 그 다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을 따라야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해당 위원회를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로서 새로이 구성·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지역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자문기관을 운영하게 하려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대체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및 그 소속 위원이 학식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의 규정은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대체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운영하려는 것이 정책 의도라면, 관련 규정을 그에 맞게 정비하거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대체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실질적으로 적합한지, 그 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3

국무조정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회 답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피해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함, 가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배상금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애 등에 따른 장애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같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함)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2024. 4. 15.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으로 하며, 다만, 해당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

(이하 “배상금”이라 함)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후 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 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이하 “간병비등”이라 함)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살펴보면, “배상금”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제6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가 같은 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제6조제1항제2호)으로서, 4·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의료지원금”은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2015. 1. 28. 법률 제1311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3. 29. 시행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배상금과 별개로 인정되는 지원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는 그 지급 목적을 달리하는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2장 배상과 보상”,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배상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급 대상(같은 법 제6조), 지급 신청의 방법과 기한(제10조), 지급 결정 동의의 효력(제16조)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그 지급 대상, 방법, 신청 기한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의료지원금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간병비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의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은 그 지급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금원으로서 피해자가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한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질병·부상 및 후유증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은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그 비용”이란 향후치료비로 배상받은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 질병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배상되었으나 그 지급 이후에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간병비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간병비등은 종전에 배상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같은 영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그 간병비등에 대해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배상금의 지급대상이었던 특정 질병에 대해 이미 지급된 배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간병비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그 간병비등에 대해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배상금 지급결정의 동의에 부여되는 재판상 화해의 성립 의제 효력이 사실상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 구제 및 법적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려는 세월호피해지원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은 그 지급 목적, 요건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비용을 이중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각각의 제도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

액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간병비 등에 대해 그 초과분을 의료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배상금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만일, 종전 배상금의 지급대상이었던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호와 같이 피해자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간병비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 4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 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제2호)나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제3호)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하 “행정안전부장관등”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해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장관등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을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는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긴급안전점검의 사유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며, 반드시 해당 시설이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있어야 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설물에 해당해야 하는 등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이 사유재산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의 규모나 범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2. 26. 회신 07-0007 해석례 참조), 행정안전부장관등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이라고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참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

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점(제2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해당 시설이 사유재산에 속한다는 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안전부장관등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장관등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법령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의 유보 하에서 달리 적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9. 15. 회신 05-002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서는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을 내국인에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조제4호에서 “안전 관리”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 등에서도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의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등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난예방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1997. 8. 30. 법률 제540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재난관리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난은 특정한 개인에 대한 피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나 범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예방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에도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외국인이라고 하여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장관등의 책무를 저해하고, 재난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등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 5

행정안전부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 회 답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합니다.

● 이 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는 생존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유하게 부여되어 정확성과 보편성이 담보되므로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고유식별정보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이므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목적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로서 그 지향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헌법재판소 2005. 7. 21. 결정 2003헌마282 결정례 참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을 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 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 사무의 범위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의 신청등과 그 처리에 관한 일련의 사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합전자민원창구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목적은 보다 간편하게 민원사항의 신청등을 하고 처리기관의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함)을 수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 행정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에 따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각 행정기관등이 소관하는 민원사항에 관한 신청등을 하거나 그에 따른 민원처리의 통지등을 수신·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민원인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일련의 사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 6

민원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기준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기준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단체”가 포함되는지?

● 회 답

-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기준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기준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기준 중 하나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대해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2호다목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기술능력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환경

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기준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그런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기준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수질환경산업기사와 환경기능사는 검정방법 및 응시자격 등에서 서로 구분되므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4의2 참조) 수질환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며,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이 요구되는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의 입법 취지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는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또는 대기환경에 관한 분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996. 2. 5. 환경부령 제18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별표 6 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규정하면서 각각의 폐기물 종류나 전문영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데, ①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함)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중 압축시설·파쇄시설·사료화·퇴비화시설 전문,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전문의 경우와 지정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질환경기사를 기술능력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②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함)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중 소각시설 전문의 경우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사를 기술능력에서 제외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12월 31일 건설폐기물법이 제정되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건설폐기물법령으로 옮겨오면서 종전과 같이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만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기준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은 파쇄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그 기술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외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는바(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예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의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만약 이와 달리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능력 허가기준으로 명시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의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 기준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이 사안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기준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단체”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협회”는 사업자단체 중 하나의 예시로 규정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협회 등의 사업자단체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규정은 사업자단체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자단체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적합한 사업자단체여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라고 할 때의 그 “사업자단체”는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일정한 권한이 주어진 협회 등의 사업자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의 기술능력 허가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어야 하고,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사업자단체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모든 사업자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기준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 7

민원인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용량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라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는지?

● 회 답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용량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라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이 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료폐기물은 같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함)만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서는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함)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고,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용량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라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이하 “진찰등”이라 함)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의 의미는 전용용기 사용에 관한 폐기물관리법령의 관련 규정 및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하도록 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에서는 의료폐기물은 발생 당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진찰등이 끝나면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넣도록 하고 있고(나목),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다목),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각시설 등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마목) 등 의료폐기물을 최초 투입하는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의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서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라고만 규정한 취지는 일정 기간 동안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개별 사례마다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어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서는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 등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참조에 따르면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외부로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구조·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제조 및 적합 검사 등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작되는 전용용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하루 안에 그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용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진찰등의 방식,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양태, 전용용기 사용 시작 후 경과한 기간,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다양한 특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용용기를 장기간 영업장 등에 방치한다면,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보관시설에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다목2)·3)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등이 종료된 시점을 같은 호나목3) 본문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투입이 완료되었음에도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하지 않고 영업장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용용기를 보관하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용용기의 용량, 진찰 등의 구체적 양상 및 사용개시 이후 경과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이에 해당한다면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지(『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6조제1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 참조),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시점을 해당 영업일의 진찰 등이 종료된 시점으로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용량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라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 등이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 8

민원인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4년 2월 7일 전에 완료하였으나, 2014년 2월 7일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의 내용 변경 없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2014년 2월 7일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회 답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4년 2월 7일 전에 완료하였으나, 2014년 2월 7일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의 내용 변경 없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2014년 2월 7일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유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된 「경관법」(이하 “「경관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경관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제1호),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제2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제3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제4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제5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경관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5일 대통령령 제2515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된 「경관법 시행령」(이하 “「경관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 「경관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중 하나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함)를 완료하기 전에 마치되(본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함)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 사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4년 2월 7일 전에 완료하였으나, 2014년 2월 7일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의 내용 변경 없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2014년 2월 7일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철도, 도시 철도, 하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치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도록 규정하였는바, 「경관법」 제26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한번 형성되면 향후 수십년간 지속되어 국토의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본 설계 완료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경관법」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원칙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경관법」 부칙 제3조에서 같은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둔 것은 사회 기반시설 사업의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이미 추진된 경우 라면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경관법」 시행일 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을 체결 하여 완료하고,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의 내용은 변경 없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① 「경관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하면서(제27조),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각종 구역 등의 변경

지정 등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경관법 시행령』 별표) 있는 반면, 『경관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경관법』 제26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경관 심의 운영 지침』 2-2-2에서는 경관 심의 이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경관에 관한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필요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 이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경관위원회의 재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이러한 경관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가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재설계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강화되거나 확대된 규정이 해당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이나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해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707 해석례 등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4년 2월 7일 전에 완료하였으나, 2014년 2월 7일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의 내용 변경 없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2014년 2월 7일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 9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 회 답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이 유

「우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함)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선택적 우편역무의 하나로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는 2인 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8조제2항에서는 동문내용증명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1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는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우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된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서 내용증명우편물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인정되고,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어(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례 참조)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만으로도 수취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취인의 주소를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기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는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의 경우에는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해석상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한 원본 및 그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은 내용증명우편물의 하나이므로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을 2인 이상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각 수취인별로 제출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내용문서를 2인 이상에게 발송하는 발송인의 편의를 위하여 같은 규칙 제48조제2항에서 수취인의 수에 관계없이 등본의 경우에는 그 등본 2통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동문내용증명의 수취인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그 등본에는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우편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경우,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우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과 같이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0

환경부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는지?

● 회 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 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 시설촉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에서는 같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시설축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시설축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폐기물시설축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7조)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허가 절차, 운영 방법에 대한 규제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그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폐기물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폐기물시설축진법 제5조 제1항은 같은 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장을 개발·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시설축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 1

【2017-168, 수산업법 위반 어업정지(60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7. 10. 청구인에게 한 수산업법 위반 어업 정지 60일 처분은 이를 어업정지 3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10. 청구인에게 한 수산업법 위반 어업 정지 6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길 ○○를 주소지로 어선번호 ○○○○○○ ○○-○○○○○○○○○ 선박 ○○호(2.20톤)를 이용한 연안자망 어업허가(제○○○○○-○○○호)를, 어선번호 △△△△△△△-△△△△△△△ 선박 △△호(3.95톤)를 이용한 연안통발 어업허가(제△△△△-△△△호)를 득한 자로서, 2017. 5. 19. 09:50분경 ○○군 ○○면 ○○ 서방 200미터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업의 허가를 득한 어선의 표지판을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득한 선박(어선번호 ○○○○○○○○-○○○○○○○○○, ○○호)에 부착하여 무허가 통발조업을 하다 적발되어, 2017. 7. 7.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69조 위반으로 어업정지 60일의 처분을 받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과중하여 청구인에게에는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10. 청구인에게 한 수산업법 위반 어업정지 6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2013년 귀향하여 어업경영인 후계자로 선정되어 수협으로부터 1억 3천 8백만원을 대출받아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조업의 편의를 위해 수산업법을 위반하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하였다고는 하나, ①2014년 어업허가 이후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이 사건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훼손이나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은 점, ③해당 어업이 청구인과 청구인 부친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④단속일에 채취한 돌게 20kg을 몰수당하여 청구인에게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 ⑤이 사건 처분으로 수협에 1억원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는 점, ⑥청구인에게 연안자망어업과 연안통발어업권이 있다는 점, ⑦청구인의 부친이 조업의 편의를 위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과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처분의 경중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위반자의 반성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필요성 등을 원용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를 감면사유로 삼을 재량은 없다할 것이고,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청구인의 무허가 통발조업과 어선표지의무 위반행위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둘 중 중한 처분기준인 60일 정지처분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용하고 감경사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감경 없이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피청구인이 이루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경중을 따졌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의 생계문제가 수산업의 기본제도, 수산업의 발전, 어업의 민주화 등과 비교하여 당연히 더욱 중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 1) 「수산업법」 제34조, 제41조, 제49조 제69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 2)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5. 판 단

가. 사실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등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3. 6. 28.부터 현재까지父 김○○와 ○○군 ○○면 ○○길 ○○에서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고 있다.
- 2) 청구인은 2016. 4. 30. 청구외 ○○○로부터 △△호(3.95톤) 어선을 금9천3백5십만원에 매입 계약하고, 2016. 5. 10. 위 △△호(어선번호 △△△△△△△-△△△△△△△)에 ○○군 연안통발어업 제△△△△-△△△호로 연안통발어업을, 2016. 5. 30. ○○호(어선번호 ○○-○○○○○○○-○○○○○○○○○ 2.20톤)에 ○○군 연안자망어업 제○○-○○-○○○호로 연안자망어업을 득한 선주이다.
- 3) 청구인은 2016. 5. 17.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지원장으로부터 2016년 어업인후계자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고 지원자금 융자신청 대상에 포함되었다.

- 4) 청구인이 2016. 5. 23. ○○군수산업협동조합장과 체결한 여신거래 추가약정서 제6호 가목으로부터『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정지 60일 이상(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의 처분통보를 받은 경우 채무(1억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5) 2017. 5. 19. 청구인이 경매장에 나가 있는 사이, 청구인의父 김○○가 직접 이 사건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득한 ○○호(2.20톤, ○○○○○○-○○○○○○○○, 이하 ‘사건어선’이라 한다)에 연안통발어업의 허가를 득한 어선의 표지판을 부착하고 같은 날 09:50분경 ○○군 ○○면 ○○ 서방 200미터 해상에서 무허가 통발어업 조업을 하고 입항하던 중 전라남도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채취한 돌게 20kg을 모두 몰수당하였고, 청구인은 2017. 6. 19. 피청구인으로부터 범칙어선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받고 2017. 7. 3.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의견

-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득한 선박으로 연안통발어업을 행하였음을 인정함
- 허가받은 연안자망어업과 연안통발어업을 영위함에 있어 허가과 관련된 선박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니 어업정지 60일이 아닌 단 1일이라도 감경하여 제출인이 수협에 대출금 1억원의 상환을 유예받도록 선처 바람.

- 6) 피청구인은 2017. 7. 10. 청구인에게 무허가 통발어업 불법조업 및 어선표지판 위반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범칙어선 행정처분 명령을 하였다.

□ 명령서

- 어업정지처분기간 : 어업정지 60일(2017. 7. 14.~2017. 9. 11.)

- 어업정지처분의 집행항 : ○○면 ○○항
- 위반일 : 2017. 5. 19. 09:50분 / ○○면 ○○만 ○○ 서방 200미터 해상
- 수산업법 제41조, 제69조 제2항(무허가 통발어업 불법조업 및 어선표지판 위반)
- 어업의 허가번호 : 연안자망 제○○○○-○○○호(○○호, 2.20톤, ○○○○○○○○-○○○○○○○○)

7) 청구인은 2017. 7. 17.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7. 7. 18.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였다.

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은 2017. 11. 17. 청구인의 이 사건 (2017년 형제20795호) 수산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에서 연안자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II. 개별기준 2. 허가어업·신고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가. 수산업법 제27호에서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어업정지 60일이 규정되어 있다.
- 2)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행정처분 명령서 등에 따르면, 사건어선이 허가받은 어구가 아닌 통발어구를 조업목적으로 적재하고 ㄷ○군 ○○면 ○○ 서방 200미터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득한 선박으로 연안통발어업을 행하였음을 인정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로 조업한 사실 자체만으로 관계법령상 위반행위가 성립된다할 것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인 법 위반사실 자체에 의해 가해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어선은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임에도 허가 외의 어구인 통발어구로 불법조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어업허가증, 어업인후계자 관련자료, 위탁판매 실적확인서, 수협 여신거래추가약정서 등)에 비추어 보면, ①어업허가 이후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이 사건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훼손이나 타인의 재산 침해행위가 없는 점, ③해당 어업이 청구인과 청구인 부친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④사건일에 채취한 돌게 20kg을 몰수당하여 청구인에게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⑤이 사건 처분으로 수협에 대출금 1억원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점, ⑥청구인에게 연안자망어업과 연안통발어업권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례 2

【2017-177,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11.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9.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 외 2필지 4,285.9㎡ 부지 내에 2,502㎡의 동식물관련시설(계사)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11.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고, 청구인은 2017. 8. 3.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11.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소방, 가축사육제한, 가축입지 및 거리제한 등 관계법에 저촉이 없고, 1, 2차 심의 과정에서 차량 진출입시 악취 문제 대책서류와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주변마을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였기에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고, 환경전문가의 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기수갈고동 서식지에 영향 준다는 막연한 이유의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 1) 이 사건 청구인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는 총 3차례 심의를 거치면서 청구인에게 사업신청지는 진·출입하기 위한 농어촌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계사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축사 집단화 우려에 대한 주민 생활 피해 방지대책을 보완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보완요청에 대하여 2차 재심의를 출하 차량의 탈취제 및 소독의 주기적 실시, 화물적재 부분 차광막 및 가림막 설치운영 보완과 주민 44명의 동의서, ○○마을 이장 외 16명의 동의서 제출로 축사신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인근 마을 등의 피해를 방지함이라는 추상적인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 2) 이 사건 계사 신축에 따른 진·출입 경로가 인근 마을과 약 150m에서 300m정도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여 진·출입에 따른 악취와 농로 위 분노 발생 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더불어 매년 AI 조류독감이 지속적으로 발생·변종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적인 비상사태까지 이어져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우려 되며, 현재 허가지 주변에 계사 허가신청 1건이 진행 중으로 점차적인 집단화에 대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보완사항은 근본적인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자료와 데이터가 너무 미흡한 상태로 주민의 생활권과 안전보장의 침해가 우려되어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없다.
- 3) 악취의 허용기준은 인내 할 수 있는 범위가 개인차가 있으며, 환경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은 인내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중대한 악취만을 제재하고 있으나, 이 사업 예정지 인근에 ○○면 ○○리 ○○○○번지에 4,420㎡ 육계사가 허가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점차적으로 집단화가 예상되어 악취는 더 심해질 것이 인정되어 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 재심의 결정하면서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의 피해방지 계획은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로는 미흡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기수갈고동 서식지 영향에 미칠 것이 크기에 부득이 부결처리 되었다.

4. 관계법령

- 1) 「건축법」 제11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3) 「○○군 군계획 조례」 제75조(회의운영)
-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9(2-9-4)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6. 12. 9. ○○군 ○○면 ○○리 949-1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사업면적 4,285.9㎡, 건축면적 2,502㎡, 개발행위 목적 ‘동물관련시설(계사)신축 부지조성사업’으로 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 각각 해당한다.
- 2) 피청구인은 2016. 12. 12. 관련부서 협의요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 2. 15.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1차 심의, 2017. 4. 4. 2차 재심의, 2017. 6. 22. 3차 재심의를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업신청지는 진출입하기 위한 농어촌 도로를 따라 인근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계사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축사 집단화 우려에 대한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 방지대책을 보완할 것

- 3) 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처분서에 기재된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부적합

- 국토계획법 제59조 군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할 수 있으나 ○○군 군계획 조례 제75조 제4항 반복심의 3회 한정되어 개발행위 허가 진행 절차 불가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규정 의거 인근 하천에 축사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과 토양오염원 유발 및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위해 발생 우려됨.
-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기수갈고동 서식지 봉강천 하구 서식지로 생물자원보호 필요하며 축사 신축시 영향이 우려됨.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는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제1호 라목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고,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인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판결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에게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다할 것이고, 다만, 피청구인에게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할 의무만이 있다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에서의 계사는 악취,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한 번 발생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은 폭넓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한 하자는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금융/금전거래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표제에 차용증임을 알립니다.
 - 차용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이자의 유무, 이율 등에 관해 밝힙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을 분명히 합니다.



- 금전의 수령 또는 차용이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실제 수령한 날짜를 적습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 수신인은 채권자로 합니다.

◆ 공증 방법

-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다가와 돈을 갚으려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 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제

- ☞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 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 변제의 제공

- ☞ 변제는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 ☞ 변제를 제공하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합니다.

◆ 변제의 장소

- ☞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 변제비용의 부담

- ☞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서울에 사는 채권자의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기 위해 든 차비나, 은행의 계좌이체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드는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변제비용입니다.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외상값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 1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 ①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 ②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
-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⑤ 3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지인에게 이율 20%에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왔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와서는 일단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걸로 하자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게 우선 아닌가요?



이자부터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미리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총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손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총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가져온 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이자에 먼저 총당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원금의 일부로 총당함으로써 결국 원금이 200만원이 남아 있게 됩니다.

◆ 변제 총당

- ☞ “변제 총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원금)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기에는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총당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총당의 순서

-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총당할 것인지에 관해 미리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는 차용증 작성 시 명시할 수도 있고, 일부 변제 시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총당해야 합니다.



- ☞ 비용, 이자, 원본의 총당순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변제총당의 순서에 따릅니다.
-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총당합니다.
 -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총당합니다.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총당합니다.
 - 위의 표준에 따라 총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총당합니다.





집안일에 소홀하던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빚을 지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대신 갚으라며 횡포를 부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의 하나로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계속해서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에 관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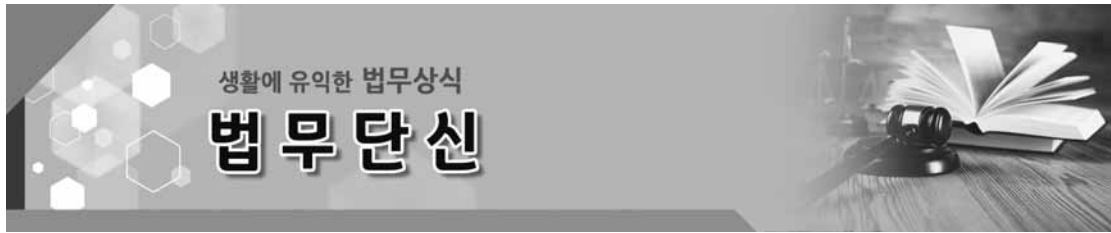
◆ 벌칙

-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 주차 차량에 ‘꽂’ ... 책임은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복도 창문은 공유부분이라 창문의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홀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나6106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C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주차했다. 이 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 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이다.

그런데 이날 15층에 사는 A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돼 있던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B씨의 차량이 파손됐다.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B씨에게 보험금 28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9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C아파트 107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용부분 등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창문은 A씨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도 전체에 동일한 형식으로 창문이 설치돼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창문의 점유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용부분인 복도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창문의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됐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5년이 넘도록 국가에 금전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의원을 지냈던 장모씨가 국가재정법 제96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47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에 대해 금전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가채무에 대해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가지는 이익이 매우 크지만, 채무자인 국가는 기한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해 그해의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시키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다음해에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며 “국가로서는 법률 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안정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재판소는 지난 2001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예산회계법에 대해 합헌 결정(99헌바37)을 했는데, 결정 이후 같은 취지의 조항에 관해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장씨는 2006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무죄 판결은 2009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장씨는 2015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로 아파트 화재 났다면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제조사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흥국화재(소송대리인 배광호 변호사)가 안마의자 제조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 5303393)에서 “A사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에 사는 최모씨는 2013년 12월 A사가 제작한 전기 안마의자를 구입해 자신의 집 작은 방에 두고 사용했다. 그런데 2016년 9월 이 안마의자에서 불이 붙은 후 아파트 벽과 천장 등으로 화염이 번지는 화재가 발생했다.

최씨와 재산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는 4,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안마의자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제품 내부의 전기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에게 유지관리·보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의자는 2년 9개월 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화재 당시 안마의자가 다른 여러 전기 기구들과 함께 같은 벽면 콘센트에 무리하게 연결돼 있었다거나 안마의자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안마의자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계속) 꽂아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정상적인 용법의 범주를 벗어난

형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화재는 A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안마의자 자체의 내부적 장치의 전기적 결함 내지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마의자가 설치된 최씨의 집) 작은 방에는 화재 발생 초기 매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A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민법 한글화’ 3년만에 재시동

민법 제정 후 57년 동안 그대로 써 온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없애는 ‘민법 한글화’ 작업이 3년만에 재추진된다.

법무부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인 민법 용어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1958년 제정돼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단 한 차례도 용어나 문장 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시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2013년 ‘알기 쉬운 민법 정비’ 작업에 나서 개정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꾸리고 2015년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개정안은 △민법 총칙편(제1조~제184조) △물권편(제185조~제372조) △채권편(제373조~제766조) △친족편·상속편(제767조~제1118조)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가주소(假住所)’는 ‘임시주소’로, ‘궁박(窮迫)’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바꿨다. ‘요(要)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도 ‘필요가 없다’로 바뀌 일본식 한자어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로 순화했다.

쉽게 풀어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도 개선된다.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뜻하는 ‘해태(懈怠)’는 ‘게을리한’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최고(催告)’는 ‘촉구’로 바뀐다.

불명확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도 명확하게 다듬었다. ‘선택권은 상대방에 있다’는 표현은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로, ‘상당한’은 ‘적절한’으로,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는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로 각각 정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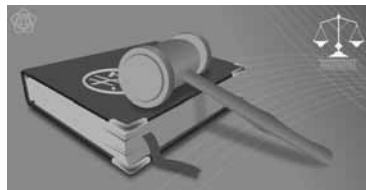
지나치게 축약돼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용어도 정비된다. ‘표의자(表意者)’는 ‘의사표시자’로, ‘복임권(復任權)’은 ‘복대리인 선임권’으로 풀어썼다.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남성중심적 표현도 개선한다. ‘친생자(親生子)’와 ‘양자(養子)’는 각각 ‘친생자녀(親生子女)’와 ‘양자녀(養子女)’로 개정한다.

개정안은 또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해 법률의 한글화를 실현했다.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과 같이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도록했다.

이와 함께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선의·악의 △하자 △유류분 △참칭상속인 등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개념이 확립됐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은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크다”며 “기본법인 민법의 개정은 다른 법령의 정비기준도 제시하게 돼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주자격 외국인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앞으로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영주권 갱신제도 도입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규정 △보호 일시해제 직권심사 도입 △외국인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기한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기한 내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돼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나 신원보증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청구가 없더라도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심사해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다. 보호외국인 등이 보호해제 절차를 잘 모르거나 신원보증인 등이 없어 청구를 못하는 경우에도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긴급 출국정지란 일반적인 출국정지와 달리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먼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사후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한 제도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체계화하고 영주자격 취득요건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하고 일반체류자격을 다시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했다. 또 영주자격의 법적지위 및 취득요건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시했다.

법무부는 “중전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킨 것”이라며 “외국인들에게는 국내 체류에 따른 법적 지위를 명확히 알려주고 정부의 외국인 관리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영주자격 취소사유를 일반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보다 강화해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공무원,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즉시 '퇴출'

정부가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완대책은 여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 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조치가 담겼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을 당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원이 당연퇴직을 당하면 파면·해임과 달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연퇴직시킬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해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성폭력 대책의 컨트롤타워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올 3월부터 100일동안 공공부문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센터'를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되고 별도의 전화나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정부는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국장급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가 참여해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도 설치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만으로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협의체 구성으로 다른 부처와 협력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요구하고 압박할 수단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비공개 정보’도 법원의 제출명령 거부 못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했다면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A씨는 2014년 6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회의록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한 부분과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한 부분 등 회의록 일부만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회의록 전부를 공개해달라”며, 법무부는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와 법무부장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최근 모두 기각했다(2015무423).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해 자기 주장의 근거나 보조자료로 삼았다면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부분 등의 제출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출을 명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농협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 금지’ 규정 합헌

농업협동조합장이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6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37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부행위 처벌 조항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행하여져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 조합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부행위 처벌 조항이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함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법익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며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 조합장 선택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 지역농협의 민주적인 운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모 농협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2010년 9월 조합원 김모씨에게 쌀 1포대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2010~2014년 조합원들에게 쌀 10포대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신호등 고장 ‘교통사고’ ... “지자체 20% 책임”

빨간불이 고장 나 보행자 신호등에 아무런 신호도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가단5010148)에서 “시는 2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 승합차를 운전해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왕복 6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 권모양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권양은 골반이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으나 적색등이 작동하지 않았다. 권양이 길을 건널 때는 빨간불이 켜져 있어야 할 때였다. 김씨는 차량용 신호기에 파란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차량을 운행했다.

김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은 11억7,000여만원을 보험금 등으로 지급한 뒤 지난해 1월 “신호기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신호기를 관리하는 김해시도 50%의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바로 앞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별도로 있다”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기가 진행신호일 경우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는 정지신호일 것으로 신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나 그 신호기의 신호와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불일치 또는 모순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사고 당시 권양은 실제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적색등이 고장나 신호기에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자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신호기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며 “김해시 측은 자신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조물인 신호기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해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하고 있던 권양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해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길거리서 강아지 팔다 ‘벌금형’ ... 왜?

길거리나 시장에서 강아지와 고양이·토끼 등 반려동물을 무단으로 판매하면 최대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반드시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강아지 공장’으로 상징되는 비위생적인 공장식 반려동물 사육을 규제하고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46조 4항 1호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적으로 판매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은 이 벌금액 한도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몰라 실제로 처벌 받은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박모씨는 2014년 2월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강아지 3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진열하고 지나가던 손님들에게 강아지를 1마리당 4~5만원에, 고양이를 3만원에 팔았다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며 박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4고정1351).

2015년 9월 김모씨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토끼를 팔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박스에 토끼 7마리를 담아와 팔았는데 역시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

판매행위를 한 점이 유죄로 인정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2015고정4006).

물론 이 같은 반려동물 판매 규제는 ‘영업’으로 할 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단순히 일회성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시골에서 할머니가 집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아 이를 모두 키우기 부담스러워 장에 나가 1회적으로 강아지들을 팔았다면 동물판매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팔거나 다른 농장에서 강아지를 떼와 파는 것은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이상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학교 앞이나 육교, 길거리 등에서 병아리를 판매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또 다른 박모씨는 구청에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9년 10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앞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구입한 강아지와 고양이, 병아리 등을 종이박스에 담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2010고정1289).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벌금을 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유죄이라는 뜻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합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병아리를 판매한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한편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판매업 뿐만 아니라 동물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의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10 시행법령] 다 함께 사는 쾌적한 공동주택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아파트 내 간접흡연으로 고통스러우셨나요? 다 함께 사는 쾌적한 공동주택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됩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개정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2.10.] [법률 제14853호, 2017.8.9., 일부개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내 통장에 들어온 내 돈이라구요~!

어느 날 통장정리를 하던 이대박씨는 계좌에 1천만원의 돈이 들어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이 난 대박씨는 '이게 웬 떡이야~~'하며 그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은 ☆★주식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이대박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의 실수로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대박씨, 정말 이 돈을 써도 되는 걸까요?

1. 설아 : 당연히 써도 되는 돈이지~ 대박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잖아? 실수로 돈이 잘못 입금된 게 대박이 잘못도 아니고... 게다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대박이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어~
2. 수아 : 무슨 소리~! 아무리 대박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라고 해도 잘못 송금된 돈이잖아? 비록 모르는 사람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잘못 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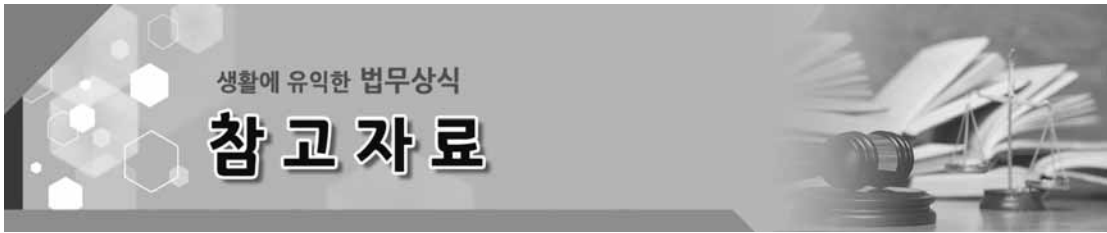
☞ 정답은 2번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따라서 타인의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우연히 이체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별 공직자 행위기준

1 상시제한

주 체	내 용	근 거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85①
공무원	• 선거운동(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중처벌)	§60① §85②
	•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경선운동	§57의2③ §57의6
공무원 등*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퇴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86① 1~3호
자치단체장	• 소관사무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그 밖의 광고 출연	§86⑦
	•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주례 포함)	§113①
누구든지	•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85③
	•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85④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87②

* 공무원(국회의원, 그 보좌관·비서관·비서·지방의회의원 제외),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인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②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 ('17. 12. 15. ~ '18. 6. 13.)

주 체	내 용	근 거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및 신문·방송 포함) 발행·배부·방송	§86⑤
자치단체장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86⑥

③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 ('18. 3. 15. ~ 6.13.)

주 체	내 용	근 거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방송출연(선거법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 제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①
	• 신문·잡지 등에 칼럼이나 저술 게재	선거기사 심의기준 §11 3호
누구든지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103⑤

④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18. 4. 14. ~ 6.13.)

주 체	내 용	근 거
자치단체장	•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 (예외)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86② 2~3호
	• 통·리·반장회의 참석 (천재·지변·재해, 집단·긴급민원 발생 시 참석가능)	§86②5호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86②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초도순시·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 여론을 청취하면서 참석한 소속공무원·임직원·유관기관장·주민 대표에게 통상의 범위 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장은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112② 4호 라목

※ §86②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60일부터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행위
(법 §86②4호 각목, 규칙 §47②)

- ▶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개최·후원
-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개최·후원
- ▶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有償) 교양강좌 개최·후원
-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새로운 강좌 개설, 수강생 증원,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강좌 제외)
- ▶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 개최·후원
-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

⑤ 선거기간 중 제한('18. 5. 31. ~ 6.13.)

주 체	내 용	근 거
공무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86① 5~7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112② 4호 바목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	§103②
누구든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101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 반상회 개최(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103③④

* 공무원(국회의원, 그 보좌관·비서관·비서·지방의회의원 제외),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인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지방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18.1.15.(월)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2. 13.(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3. 2.(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구청장·시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 15.(목)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 5.14(월)까지]
3. 15.(목)부터 6. 13.(수)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4. 1.(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군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4. 14.(토)부터 6. 13.(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 22.(화)부터 5. 26.(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5. 24.(목)부터 5. 25.(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5. 30.(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5. 31.(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6. 1.(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에
6. 1.(금)까지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 3.(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 전 10일까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 8.(금)부터 6. 9.(토)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6. 13.(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